



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

자료제공 : 김재규 교수

##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( § 11의5)

형의 감면 대상 범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형법」 살인의 죄, 상해와 폭행의 죄, 강간(추행X)에 관한 범죄, 강도에 관한 범죄(절도X)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</li> <li>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정폭력범죄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아동학대범죄</li> </ol>
요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‘형의 감면 대상인 범죄’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·신체(재산 X)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(위해의 명백성과 긴급성) → 대상범죄에 재산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</li> <li>②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.</li> <li>③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(경미한 과실 X)이 없어야 한다. →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므로 과실 중 경과실만 면책규정이 적용된다. → 1. 직무수행의 불가 피성, 2. 필요최소한의 범위,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형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.</li> </ol>
효과	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(임의적 감면).

09 아래 보기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11조의5에서는 ‘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’을 인정하고 있다. 이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형법」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,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,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,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</li> <li>2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정폭력범죄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아동학대범죄</li> </ol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형의 감면 대상인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.</li> <li>②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.</li> <li>③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.</li> <li>④ 효과로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</li> </ol>

답 : 2